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1. 13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1.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1.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재래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및 재래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 판매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 위원은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 대표 3명,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 예산의 지원(안 제8조)

-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반영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현재 위원회에 6명의 재래시장 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각 구별 1명과 연합회 대표 3명입니다.
○ 시의원이 3명인데 안전 결정시 대표자 6명이므로 치우칠 우려가 없는지?	○ 조례가 제정되면 3명만 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 등록, 무등록업체가 40개인데 연합회 범위 내에 속하는지요?	○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유시장 내에 있습니다.
○ 위원회 공무원이 1인인데 어떤 직급으로 구성하십니까?	○ 간사나 서기 역할을 맡을 과장 또는 6급 팀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금번 회기 중 처리해야 되므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임.

나. 반대토론

-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재래시장연합회를 삭제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여 공무원은 책임있는 국장급으로 함과 동시에 소비자 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해야 할 것임.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재래시장 연합회에 대해 협의, 자문하는 기구가 아닌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72호
의결년월일	2000. 1. 21 (제76회)

제출년월일 : 2000. 1. 19

제출자 : 기획재정위원장

□ 수정이유

-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 본 위원회는 재래시장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 자문을 위한 기구가 아니며 재래시장의 특화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이므로 재래시장연합회의 문안을 삭제하였으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나, 각종 안건의 의결 및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위원회 구성인원 중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에 대해 좀더 공무원 한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 또한 위원회 구성원 중 소비자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구성 범위를 확대하였음.

□ 수정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목적에서 일부 문안을 삭제(안 제1조)

- 위원회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조정(안 제3조1항)
- 위원회 구성원 중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1명을 담당국장 1명으로 조정(안 제3조3항 3호)
- 위원회 구성원 중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안 제3조3항4호)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중 “를 위한 재래시장연합회의”를 “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3조(구성) 제1항중 “12인”을 “13인”으로 한다.

안 제3조(구성) 제3항3호중 “공무원 1명”을 “국장 1명”으로 한다.

안 제3조(구성) 제3항4호중 “전문가”를 “소비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연합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에 관한.....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13인 ③.....
3.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u>공무원 1명</u>	3. <u>국장 1명</u>
4.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u>전문가</u>	4.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가

[수정안 포함]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한다.

1. 재래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재래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판매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부천시재래시장연합회가 추천하는 연합회대표 3명
3. 부천시재래시장업무 소관부서 국장 1명
4.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1회 개최하며 매분기 첫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 이상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위원인 시장대표 또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래시장특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